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0337 판결 [보증채무금]

참 조 조 문

민법 제105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033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3나40332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조AA무약 합자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BA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CA

【피고보조참가인】 조D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7. 14. 선고 2003나403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9. 3. 1.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관하여 주문(구매)신청과 수금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게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위 용역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제품의 판매 및 대금수금 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기왕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참가인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을 한 사실, 위 용역계약이 종료할 당시 원고의 거래원장과 거래처 약국이 발행한 잔고확인서상의 차액이 합계 201,894,254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이 위 차액 201,894,254원의 지급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참가인의 용역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 201,894,2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참가인이나 피고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관하여 위 용역계약서상으로는 참가인의 경우 ‘용역제공시 원고가 지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여야 하며 임의로 할인하여 거래함으로 발생하는 차액 등 원고의 손해(금전, 신용)를 배상하여야 한다(제7조)’고 규정되어 있음과 아울러 ‘참가인의 용역계약해지나 기타 사유로 거래처를 인수인계할 경우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명세서를 작성하여 신의성실원칙에 입각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차액(거래처에서 인정하지 않는 부분 전체)은 변제하여야 한다(제10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음에 반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서상으로는 피고의 경우 ‘참가인이 위 용역계약에 따라 제품의 판매 및 대금수금 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기왕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참가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참가인과는 달리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가 입게 되는 위 용역계약 제7조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 차액의 발생이 참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은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역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고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부동산 담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용역계약이 체결되는 날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참가인의 손해배상의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와 같은 보증계약 체결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의 보증범위를 용역계약내용 중 일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만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를 용역계약상 일부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만으로 제한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약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한 보증서의 문언은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제공자가 귀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 및 대금수금 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귀사에 입힌 기왕 또는 장래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용역제공자와 연대하여 질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원고가 참가인의 용역계약상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모든 손해의 배상책임에 대한 담보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증책임은,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인 위 보증서의 문언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제7조의 의무뿐만 아니라 다른 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참가인의 손해배상책임까지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내세운 사정을 들어, 참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위 용역계약서 제7조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만 피고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피고의 보증책임의 범위를 제한하였으니, 원심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